신.구조문 대비표

□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에 관한 규정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의 2(복수전공 변경) ①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은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한다. 단 소속전공주임교수 및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. ② 변경신청 기간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으로 한다.	**제4조(변경)** ① **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의 변경은 소속 전공 주임교수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.** ② ---------- **학적변동** ----------
(신설)	**제5조(포기) ①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의 포기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소속 전공 주임교수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허용할 수 있다.** **② 포기신청 기간은 매 학기말 공고된 기간으로 한다. 단, 9학기 이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.**
제4조(졸업유보) 제1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을 취득한 후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중일 때에는 졸업을 유보 할 수 있다.	**제6조(졸업유보)** ---------- **졸업을 유보한다.**
제5조(학위이수)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면 학칙 제40조에 따라 학위수여를 수여한다.	**제7조(학위이수)** ---------- **제41조에**----------
	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